

조교 보수 규정

제 정 : 2016. 8. 1.
개 정 : 2017. 11. 1.
개 정 : 2019. 11.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조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교 보수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수, 제수당 지급 내용) ① 행정조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직원보수규정(계약직)을 준용하여 총장이 정한다.
② 연구조교에게는 조교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일) 보수는 월급으로 하고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휴일일 때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 (기간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임용기간의 연장은 근속기간으로 본다.

제6조(계산기준) ① 보수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② 보수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 급여액의 1/30로 한다.

제7조(초임호봉) 행정조교의 초임금은 경력을 참작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8조(승호) 승호는 행정조교 중 재임용 심사를 거쳐 재임용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 시 시행한다.

제9조(퇴직자의 보수) 퇴직자의 보수는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5일 이후 퇴직의 경우에는 당월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10조(제수당 등) 삭제

제11조(퇴직금) 행정조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장학금 수혜자인 연구조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의 보수 지급은 폐지된 조교급여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10조)
단, 이 개정 규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은 11월 급여 분부터 적용한다.